

1	2024년 시설분야 컨설팅 지원 공고
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사업명	지원내용	지원한도	지원조건
시설분야 컨설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사업계획의 사업량·예산의 적정성, 사업 공법의 타당성 및 적정성과 관련 법률 검토 등 사업추진 방향 검토 	시장당 연간 2건 (최대 6일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1건당 최대 2일 방문

□ 시설분야 컨설팅

○ 지원내용

- 시설현대화, 화재안전망 구축, 주차환경개선 사업 등 전통시장 시설환경개선 사업의 추진을 위한 관련 분야별 전문가 컨설팅 지원
- 사업 신청 전 각 전통시장의 시설분야 사업의 필요성, 사업 공법의 타당성, 예산의 적정성 및 관련 법령 검토

□ 견적산출

○ 지원내용

- 안전·시설분야 전문가를 통한 총사업비 1억원 이상 시설현대화, 안전시설, 주차환경개선 사업 등에 대해 상세견적 산출

사업	지원대상 사업
시설현대화 사업	· 이용 편리성의 증대를 위한 시설 (진입도로, 시장 및 주차장 등 출입 직접 연결 도로 및 화장실 등)
	· 상권기능 개선시설 (아케이드, 고객지원센터, 상인회 사무실, 배송센터 등)
	· 상하수도 및 냉난방시설
	· 시장 특성을 살리기 위한 관광거리, 조형물
	· 안전 보강을 위한 방수, 도색, 수선 등
	·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훼손한 시설
안전시설 구축	· 전통시장 안전시설 지원사업
	· CCTV 설치, 화재 알람 시설, 소방시설 설치,
	· 노후 전선 정비
	· 석면철거 등 안전 관련 사업

※ 「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 사업 운영지침」 제7조(지원대상 사업) 참고

2

신청대상

□ 신청대상

- 시설현대화, 안전시설, 주차환경개선 사업을 추진 계획중인 도내 전통시장 및 상점가, 골목형 상점가, 상권활성화구역
 - ※ 해당연도 또는 연차사업으로 총사업비 1억원 이상의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 3년 이내에 실시한 사전컨설팅 또는 연구용역 제출 필요

□ 신청자격

-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제2조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, 골목형상점가, 상권활성화 구역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를 보유한 시군

< 지원요건 >

1.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 65조에 따른 상인회로서 상인회 가입률이 시행규칙 제 12조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상인회
2. 「유통상업발전법」 제18조에 따른 상점가진흥조합
3. 「중소기업협동조합법」에 따라 시장상인을 조합원으로 설립한 사업협동 조합 또는 협동조합
4. 「민법」에 따라 시장 등 상인이 설립한 법인
5.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 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

※ 「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 및 안전시설 사업 운영지침」 제3조(지원대상)

3

신청 및 접수

□ 신청방법 : 온라인(전자문서) 공문 접수

□ 신청기간 및 절차

접수처	사업명	신청기간	신청절차
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	시설분야 컨설팅	'24년 3월 ~ 예산소진 시	전통시장 → 시·군 → 진흥원

□ 문의처

-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

문의처	담당자	전화번호	비고
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	박강희 주임	031-5181-7215	